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24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 구자근・인요한・최수진

신동욱 • 박성민 • 박덕흠

김선교 · 강명구 · 이만희
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직선거법」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·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 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 가 있음.

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·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

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사용할"을 "사용할 공직선거 투표용지 등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"유가증권"을 "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표용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조폐공	제1조(목적)		
사를 설립하여 은행권, 주화,			
국채, 공채, 각종 유가증권 및			
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이 <u>사용</u>	사용		
할 특수제품의 제조(製造)와 그	할 공직선거 투표용지 등		
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			
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			
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11조(업무) ① 공사의 업무는	제11조(업무) ①		
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	2		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			
행하는 각종 <u>유가증권</u> 의 제조	<u>유가증권 및 공직</u>		
	<u>선거 투표용지</u>		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